

# 알권리 시대, 정부3.0의 위험과 과제

## A Study on Government 3.0 in the Era of the Right to Know

김 유 승 (You-seung Kim)\*

### 목 차

- |              |                      |
|--------------|----------------------|
| 1. 시작하는 글    | 5. 박근혜정부의 정부3.0과 알권리 |
| 2. 선행연구 분석   | 6. 정부3.0의 위험과 과제     |
| 3. 알권리의 정의   | 7. 맺는 글              |
| 4. 알권리제도의 연혁 |                      |

### <초 록>

본 연구는 알권리제도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박근혜정부의 정부3.0이 당면한 과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알권리의 개념을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또한, 18세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알권리제도의 연혁을 고전적 자유주의 기반의 알권리 시대, 청구에 의한 수동적 정보공개시대, 적극적 정보공유의 시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알권리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정부3.0의 성과와 한계를 논하고, 결론에 갈음하여 정부3.0의 위험과 과제를 공공정보의 '품질', '수집과 활용을 통한 통제와 감시', '보안'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고찰한다.

주제어: 정부3.0, 알권리, 정보공개, 공공정보, 공공데이터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paradigm shift of the right to know and to analyze the government 3.0 policies of the Park Gun-Hae's administration. The study analyzes the preceding researches on the rights to know and freedom of information. It also defines the concept of the right to know in both broad and narrow senses. Furthermore, the history of people's right to know is analyzed and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stages. Then, the outcomes and limitations of government 3.0 during Park Gun-Hae's administration are explored. As a result, the study discusses the dangers and the future tasks of government 3.0 in terms of quality, gathering, and security of public information.

Keywords: government 3.0, right to know, freedom of information, public information, public data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imyus@cau.ac.kr)

■ 접수일: 2014년 10월 24일 ■ 최초심사일: 2014년 11월 9일 ■ 게재확정일: 2014년 11월 19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37-62, 2014. <<http://dx.doi.org/10.14404/JKSARM.2014.14.4.037>>

## 1. 시작하는 글

한 세기 전, 아니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알권리”라는 것은 개념조차 없었다. 모든 행정, 공공정보는 권력과 자본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알 턱이 없었다. 행정은 위에서 아래로, 한 방향으로만 흘렀고, 행정편의의 이름 아래 원칙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고인 물이 썩듯, 흐르지 않은 정보, 독점된 정보는 부정과 부패를 낳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들만의 비밀주의는 더욱 강화되었고, 정보를 가진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의 정보 비대칭은 더욱 기울어져갔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했던 이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알권리가 되었다. 행정, 공공정보의 접근에 대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정보공개와 암호기를 거쳐, 정보공개제도로 그리고 다시 정보공표제도로까지 확대된 접근의 대역폭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공유의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고,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미국 오바마(Obama) 정부로부터 시작된 정부2.0은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2013년 박근혜정부는 대통령선거공약이었던 정부3.0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정부2.0, 그리고 정부3.0은 21세기 알권리를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참여, 개방, 공유, 소통과 협력의 가치로 알권리의 확장을 약속한 정부3.0의 미래가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한편에서는 정부3.0이

알권리의 전진이 아닌 후퇴를 부를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3.0 정책이 기반을 두고 있는 거대한 공공데이터와 개인정보의 활용이 내재하고 있는 근원적 위험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의 신뢰성으로부터 개인정보의 보호, 사이버 공간의 보안, 그리고 빅데이터의 효용성에 이르기까지 정부3.0의 실질적 구현 앞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알권리의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알권리를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연혁적으로 고찰하고, 세계 최초로 닛을 올린 정부3.0의 당면 과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분석

알권리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흐름은 1996년 정보공개법 제정 이전의 이론적 탐구와 이후의 제도적 관점의 연구로 크게 구분되며, 여기에 2013년을 기점으로 정부3.0에 관한 연구가 또 하나의 줄기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이와 같은 구분에 따라 연대기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알권리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1962년 조규하가 『신문연구』에 게재한 ‘취재의 제문제: 국민의 알권리’라는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규하의 글은 알권리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으나, 이를 본격적인 학술적 성과로 보기는 어렵다. 본격적 학술 연구는 1960년대말 장용 등의 연구로 시작된다. 장용(1969)은 “국민의 알권리가 부정되는 곳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존재할 수 없으며, 독재자와 국민의 알권리는 상극적인 입장에서 계속 암투를 하게 된다”라고 주장하며, 알권리의 대상을 정부가 행하는 모든 것으로 확장시켰고, 이후 한상범(1970), 김영호(1973), 구병석(1974), 홍성찬(1978) 등이 언론과 자유를 구성하는 요소이자 헌법적 근거에 기초한 새로운 기본권으로서의 알권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러한 70년대의 연구들은 80년대 초반 알권리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연구 성과들로 이어졌으나(구병석, 1981a, 1981b; 안용교, 1982a, 1982b), 그 수는 한 손에 꼽을 정도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사이 눈에 띄는 연구 성과로는 ‘알 권리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재검토’, ‘알 권리의 한계로서의 국가안보’ 등 김배원(1989, 1991a, 1991b)이 수행한 일련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알권리에 대한 김배원의 연구는 미국의 전자정보자유법 개정을 논한 연구(1999)와 미국 정보자유법의 30년사를 다룬 연구(2001) 등으로 이어진다.

2000년대의 알권리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을 다룬 유일상(2003), 저널리즘 영역에 있어서의 알권리의 기원과 개념변화를 분석한 이재진(2005),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액세스권과 알권리를 논한 이동훈(2009), 정보공개법을 통한 알권리 실현의 한계를 주제로 한 배정근(2009) 등의 연구가 있다. 1996년 정보공개법 제정 이후에 이루어진 이들 연구들은 알권리의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제도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선행연구와 달리, 알권리의 구체적 실현인 정보공개법과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법학과 행정학 영역을 중심으로 기록학, 문헌정보학 등

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정민, 김유승(2013)의 ‘국내 정보공개 연구 동향 분석’에 따르면, 1982년 최창섭이 『관훈저널』에 게재한 ‘정보공개요구권’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97편의 정보공개 관련 학술논문이 지속적으로 출판되었다.

정부3.0에 관한 연구는 2013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고 있다. 방민석(2013)은 정부3.0에 대한 개념적 탐색과 함께, 법정책적 과제를 논하였고, 우윤석(2013) 역시 정부3.0의 이론적 측면을 살피고 해외사례를 분석했다. 심정보(2013)는 기록관리 측면에서의 정부3.0 정책 기초를 다루었고, 정진임, 김유승(2013)은 정부3.0 시대에 걸맞는 정보공개시스템의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편, 지방정부에 초점을 둔 연구도 있었다. 오영균(2013)은 지방정부3.0 구축을 위한 이론과 과제를 논하였고, 같은 맥락에서 송효진, 황성수(2014)는 공공데이터법을 검토하고, 지방정부3.0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준비사항들을 제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알권리의 개념과 연혁의 연대기적 고찰을 통해 정부3.0으로 이어지는 알권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피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정부3.0의 문제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와 차별을 두고자 한다.

### 3. 알권리의 정의

알권리(Right to Know)는 1950년대 이후 미국 정부가 견지해온 비밀주의 정책에 대항해 언론계가 전개한 언론운동의 일환으로 주장된 용어의 하나다. 이 운동은 ‘정보를 입수할 권리’,

‘사전 검열 없이 출판할 권리’,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는 보복을 금지하고, 보복의 두려움 없이 출판할 권리’, ‘커뮤니케이션에 필수적인 시설과 자료에 접근할 권리’,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보를 확산할 권리’ 등을 핵심으로 알권리의 보장을 주장하였다(Wiggins, 1956, pp. 3-4; 유일상, 2003, p. 1, 재인용). 다시 말해, 언론운동의 측면에서 시민들이 사전 검열이나 부당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자료에 접근하고, 정부 혹은 어떠한 형태의 권력에도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권리로 알권리를 정의한 것이다(Wiggins, 1956; 이재진, 2005, pp. 233-234 재인용).

같은 맥락에서, 한병구(2000, p. 65)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무엇인가를 알고자 정보의 유통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알권리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알권리를 사회정치적 운동의 제도화된 개념으로 또는 구체적 정보에 대한 공적 청구권으로 이해하는 입장은 알권리에 대한 협의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알권리는 광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알권리는 모든 기본권의 내재적, 묵시적 전제이며(김배원, 1989), 수동적 자유권과 적극적 사회권이 복합된 불가침의 인권으로(안용교, 1974, p. 275),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이를 구성하는 부가결의 요소로 인식된다(한상범, 1970, pp. 22-23). 이러한 광의적 해석은 1966년 미국 존슨 대통령이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서명하면 남긴 언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어느 누구도 법에 의하지 않고서 정보에 대

한 비밀의 장막을 씌울 수 없으며, 모든 시민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작동한다고 천명하였다.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열린사회란 알권리가 번성하고 보호받는 곳이며, 알권리가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협의와 광의의 해석은 알권리의 미시적 그리고 거시적 역할을 설명해주는 상호보완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배정근(2009, p. 369)은 알권리를 미시적으로 개별 시민의 자아실현과 행복추구를 위한 필수적 수단인 동시에, 거시적으로 민주국가의 주인인 국민 스스로가 국정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정부를 감시, 감독하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기본권으로 규정한다. 후자의 거시적 관점은 알권리가 정부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견제가치(Checking Value)를 지니고 있음을 주장한 Balsi(1997, p. 609)의 주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정보자유운동의 바이블이 된 ‘국민의 알권리(The people’s right to know)’를 저술한 Herold Cross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그는 “자치 사회의 국민은 국정 수행을 검토하고 조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알권리를 민주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자기통치 수단으로 파악하였다(Halstuck & Chamberlin, 2006, p. 525). 권력과 자본에 의한 정보비대칭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누구나 자유롭게 평등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알권리는 민주국가의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존권인 것이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을 통해 천부적이고 보편적 인간의 권리를 선언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제15조는 “모든 공직자로부터 그 행정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 부여하고 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는 언명으로 알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모든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임을 규정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권리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1989년 9월 4일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수용 또는 접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라고 할 것이며, 또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전문과 제1조 및 제4조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 그 이외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국민

주권주의(제1조), 각 개인의 지식의 연마, 인격의 도야에는 가급적 많은 정보에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헌재 1989. 9. 4. 88헌마22, 판례집 1, 176, p. 188)

알권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알 권리의 헌법적 지위를 확인한 다음의 과제는 알권리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알권리의 대상 정보로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정보’, ‘국민 개개인이 인격적 자기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임병국, 2002; 이재진, 2005, p. 235). 이러한 포괄적 정의는 제도적, 기능적 관점 또는 목적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공공정보를 알권리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공공정보는 제도 및 기능에 따라 ‘공공·행정 기관이 직무 상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수집, 관리하는 정보’와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영역을 망라하여 국가적으로 보존하고 이용할 가치가 있는 정보’로 구분되거나(김유승, 전진한, 2011, p. 51), 목적에 따라 ‘정보의 재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영역정보(public sector information)’와 ‘콘텐츠의 이용가능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영역콘텐츠(public sector content)’로 나뉘어(OECD, 2005) 인식되고 관리되어 왔다. 하지만 알권리는 이러한 공공정보의 세부적 영역과 구분을 넘어 공공정보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는 또 다른 기본권들과 경합한다. 알권리와 함께, 국민 개인 혹은 집단에게는 자신들의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따라서 알권리는 다른 기본권들과의 경합 속에서 제한되고 유예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권의 경합 속에 공익에 따른 우선순위를 판단하게 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알권리의 광의적 개념이 일반법의 영역에서 협소해지는 것이다.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제10조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 및 사상을 주고받을 자유를 규정함과 동시에 “이러한 자유의 행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므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영토의 일체성이나 공공의 안전 무질서 및 범죄의 방지, 보건과 도덕의 보호,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 방지, 또는 사법부의 권위와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형식, 조건, 제약 또는 형벌에 따르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앞선 포괄적 범주와 비교할 때, 알권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보의 범주가 제한적이며, 알권리가 유예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담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현행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유형과 수는 상당하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헌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법률

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현한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표 1〉 참조).

하지만 정보공개법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규정하며(제2조 제1호), 제4조를 통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를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제9조 제1항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의 유형 8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할 ‘국가의 정보제공 의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공개청구권’, 공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국민의 정보수집권’, 송신자가 발신하는 정보를 공권력의 방해없이 수령할 수 있는 ‘국민의 정보수령권’(유일상, 2003, pp. 3-4) 등이 알권리를 위한 주요 활동으로 꼽히는 4가지 유형이라 할 때, 정보공개법의 절차와 규정은 ‘국가의 정보제공 의무’와 ‘국민의 공개청구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의무와 권리의 실현 도구로

〈표 1〉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기관 유형	세부 내용
국가기관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공공기관 제4조 <sup>1)</s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li> <li>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li> <li>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li> <li>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li> <li>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li> <li>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li> </ol>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li> <li>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li> <li>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li> <li>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li> <li>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li> <li>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li> <li>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li> <li>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li> </ul> </li> <li>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li> <li>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li> <li>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li> </ol>

1) 제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작동하는 알권리 관련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고자 한다.

#### 4. 알권리제도의 연혁

18세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알권리의 패러다임은 끝없이 변화 중이다. 알권리는 이를 민주주의의 기본권으로 지키고 진전시키고자 했던

이들과 이를 거부하고 후퇴시키고자 했던 세력 간의 갈등 사이에서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알권리 제도의 연혁을 18세기로부터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를 ‘고전적 자유주의 기반의 알권리 시대’, 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에서 정보공개제도를 확립해나간 ‘수동적 정보공개의 시대’, 정부2.0과 함께 도래한 ‘능동적 정보공유의 시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표 2〉 참조).

〈표 2〉 알권리제도의 연혁

시대구분	국내 법제도 및 시민운동	연도	해외 법제도
고전적 자유주의 기반의 알권리		1766	스웨덴, 정보공개제도 법제화
		1776	미국, 버지니아 권리선언
		1789	프랑스 인권선언 제15조
		1791	미국, 수정헌법 제1조
		1809	스웨덴, 알권리를 기본권으로 한 헌법 제정
청구에 의한 수동적 정보공개		1948	세계인권선언 제19조
		1966	미국, 정보자유법(FOIA) 제정
	『언론기본법』 제2조, 알권리 규정	1980	
	헌법재판소 판결 (88헌마22)	1989	
	청주시의회,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의결	1991	
		1992	유럽연합, 정보접근권에 관한 선언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88호) 제정	199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5242호) 제정	1996	미국, 전자정보자유법(EFOIA) 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사업단 발족	1998	
	판공비공개운동 네트워크 구성	2000	영국, 전자정보자유법(EFOIA) 제정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	200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 제7127호)	2004		
‘열린정부’ 사이트(www.open.go.kr) 개통	200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2008		
능동적 적극적 정보공유	‘열린정부’ 사이트 ‘정보공개시스템’으로 개명	2009	미국, Data.gov 서비스 개시
	공공정보 민간 활용 촉진 계획 수립	2010	
	공공정보제공지침 제정(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서비스 개시	2011	
	박근혜 정부,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개시	201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2013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행정정보 원문 공개 서비스) 개시	2014	



고전적 자유주의 기반의 알권리 시대를 연 국가는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한 스웨덴이다.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가 Anders Chydenius에 의해 주도된 1766년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His Majesty's Gracious Ordinance Relating to Freedom of Writing and of the Press)」을 통해 법제화된 스웨덴의 정보공개제도는 이후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하지만, 스웨덴의 정보공개제도의 출발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법이 제정되고 불과 1년 후 정부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가 제한되고, 1772년에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다가, 1809년 스웨덴 헌법에 의해 기본권으로 재등장하였다. 1930년대 스웨덴 내정에 대한 독일 나치 정권의 간섭과 「기밀보호법」 제정으로 위기를 겪기도 하였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적 제도로서 자리를 잡았다(Manninen, 2006, pp. 18-53; 심영섭, 2008, pp. 35-53; 이재완, 2014, p. 152).

이러한 스웨덴의 앞선 정보공개제도는 1951년 핀란드, 1957년 프랑스, 1970년 덴마크 등 유럽 주변국들이 정보공개법령을 선도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정보공개제도의 확립을 통해 '수동적 정보공개 시대'를 여는 시발점이 되었다.

유럽연합이 정보공개의 원칙을 최초로 천명한 것은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으로 알려진 1992년 「유럽연합조약」의 「정보 접근권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을 통해서다(EC, 1992, p. 101). 선언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이 행정에 대한 기관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신뢰를 강화한다고 명시하며, 정보의 공적 접근을 증진시킬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1993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집행위원회와 이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문서에 대한 최대한의 폭넓은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행동강령(Code of Conduct concerning Public Access to Council and Commission Documents)을 채택하였다(EC, 1993, pp. 41-42). 이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Amsterdam Treaty)」 제255조를 통해 회원국에 거주하거나 등록된 시민과 법인 모두에게 유럽 의회, 이사회, 위원회의 모든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규정함으로써 알권리를 명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1년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 의회는 유럽 집행위원회, 정상회의, 의회의 문서에 대한 공적 접근권을 규정한 법령(Regulation No 1049/2001)을 채택하기에 이른다(Augustyn & Monda, 2011, p. 17).

미국의 알권리 제도 역시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1776년 「버지니아 권리선언(The 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에서 그 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위한 가장 큰 방벽의 하나이며, 독재정부에 의해 결코 저지될 수 없다”라고 명시한 선언의 제12조는 언론, 출판, 집회, 청원이라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음을 규정한 1791년의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로 이어졌다. 하지만 미국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이하 APA)」은 일반 국민이 아닌 이해 당사자들로 정보공개청구권의 자격을 제한하고, 모호한 예외조항으로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 불복절차

를 두고 있지 않아 정보공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다(김배원, 1999, p. 192; 배병호, 2008, pp. 22-23).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여러 활동들이 결실을 맺어 정보공개에 대한 포괄적 법률인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이하 FOIA)'이 제정된 것은 1966년이였다.

우리나라에서 '알권리'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법령은 "모든 국민은 언어, 문자, 형상에 의하여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알 권리를 방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1980년의 「언론기본법」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언론기본법」의 제정 취지는 알권리의 보장과 거리가 멀었다. 1980년 계엄령 하에서 해산된 국회를 대신한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제정된 이 법은 당시 언론규제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제5공화국 출범 직후인 1980년 12월 법률 제3347호로 제정, 공포되었다가, 언론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법이라는 논란 속에 1987년 11월 28일 폐지되었다.

1989년에는 앞서 언급한 알권리에 대한 최초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88헌마22). 알권리를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할 것을 명시한 이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속에 알권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이후 전개된 정보공개운동의 준거가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공개법령은 1991년 청주시의회가 의결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다. 당시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상위법조차 제정되기 이전에 지방의회가 스

스로 나서 정보공개를 위한 조례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앞선 사례와 같이 청주시의회의 정보공개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관선시장이 조례 제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청주시의회는 조례안을 재의결하며 조례 제정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결국 조례는 청주시에 의해 대법원에 제소되었으나, 1992년 6월 대법원이 제소를 기각하고 청주시의회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인해줌으로써 시행될 수 있었다. 청주시의회의 정보공개조례와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94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이 마련되고, 1996년 12월 31일 정보공개법(법률 제5242호)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정보공개를 위한 법령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그 시행은 1년 유예되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sup>2)</sup>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부터 정보공개법령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시민운동에게 1998년 정보공개법의 시행은 본격적 정보공개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1998년 참여연대는 대중적 정보공개운동의 출범을 선언하며, 법학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사업단'을 발족하였다. 사업단의 초기 활동은 기존 관행의 개선을 요구하는 각종 토론회, 제도개선안의 발표, 공공기관의 부당한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진행 등이 주를 이루었다(하승수, 1999: 홍일표, 2009, pp. 45-46). 2000년에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의 판공비 공개운동이 전국 30여 개 시민단체로 확대되어 판공

2) 우리나라보다 뒤늦게 정보공개 관련 법령을 도입한 국가는 1999년 일본, 2000년 영국, 2005년 독일, 2007년 중국 등이다. 2013년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이 정보공개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4a, p. 3).

비공개운동 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활발한 정보공개운동만큼, 정부도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은 정보공개의 주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의 관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주었고, 2003년 6월에는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이 국무총리 훈령(제442호)으로 마련되었다.

2004년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2004년 전부개정된 정보공개법(법률 제7127호)은 기존의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주를 축소하고, 정보공개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할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어 정보공개의 양적, 질적 측면의 개선을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사전적, 자발적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행정정보 사전공표제를 명시함으로써 알권리의 패러다임을 청구에 의한 수동적 공개에서 능동적 사전 공개로 전환시키는 시발점이 되었다. 공공정보 사전공표제도의 일환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는 정책연구 관리시스템 ‘프리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공개서

비스 ‘내고장살림’,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클린아이’, 대학정보공시서비스 ‘대학알리미’ 등이 있다(〈표 3〉 참조).

2006년에는 ‘열린정부’ 사이트(www.open.go.kr)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웹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서비스는 개별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정보공개접수 창구를 통합하고, 검색, 청구, 결정 통지, 수수료납부, 열람 등의 정보공개청구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전 정보공개절차의 번거로움을 크게 개선하였고, 이후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급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8년에는 정보공개운동을 전문으로 다루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창립되어, 시민운동 기반 정보공개운동의 맥을 이어간다.

2009년은 알권리 제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해가 된다. 2009년 5월 미국 오바마 정부가 정부2.0으로 대변되는 Data.gov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정부행정기관들이 생산하는 원정보(raw data)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권을 향상시키고, 공공정보의 창조적 이용을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힌 Data.gov는 영국, 호주, 뉴

〈표 3〉 사전 공표되는 공공정보 서비스

서비스 명칭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개시일	주관 운영 부처	URL	근거 법령
프리즘	정책연구용역	2006. 1.	안전행정부	www.prism.go.kr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보	2005.12.	기획재정부	www.alio.go.kr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내고장살림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	2007. 1.	안전행정부	www.laiis.go.kr	—
클린아이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2007.12.	안전행정부	www.cleaneye.go.kr	「지방공기업법」
대학알리미	대학정보	2008.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www.academyinfo.go.kr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질랜드, 노르웨이, 캐나다 등의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었다(김유승, 2010, p. 212).

우리 정부도 정부2.0의 추이에 대응하여 2010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부 합동으로 「공공정보 민간 활용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에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2011년 행정안전부 고시로 공공정보제공지침이 제정되었고,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한다. 같은 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56호, 이하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되었다. 2013년 8월 「정보공개법」은 일부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제8조의2),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열린정부’에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2009년 이름을 바꾸었던 서비스가 이에 근거하여 2014년 2월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wonmun.open.go.kr)’로 다시 이름을 바꾸고, 행정정보 원문 공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러한 박근혜정부의 정부3.0 정책에 대한

시각들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론으로만 논의되었던 정부3.0 개념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세계 최초의 국가적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박근혜정부의 정부3.0은 수사적 표현일 뿐, 내용적으로 기존의 정부2.0 정책과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우윤석, 2013, pp. 37-38; 방민석, 2013, p. 146). 다음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정부3.0 정책과 알권리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5. 박근혜정부의 정부3.0과 알권리

정부3.0이란 정부서비스포털을 통해 개별 국민에게 맞춤형, 지능형 서비스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제공하는 개념으로, 2008년 정부2.0의 논의와 함께 등장했다. 캐나다 국립정보사회청(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이하 NISA)은 기존의 전자정부를 정부1.0이라 규정하여, 정부2.0과 구분짓고, 기술적 발전을 기반으로 진화된 정부2.0의 개념을 정부3.0이라 지칭하였다(NISA, 2008)(〈표 4〉 참조). 이후 다수 연구자들의 정부3.0에 대한 개념적 규정 역시 이를 준거로 삼고 있다(김유승, 2010, p. 207; 홍필기, 2012;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공공정보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유지하며, 일방향의 일률적 서비스를 시공간적 제약 하에 제공하는 전자정부를 정부1.0이라고 한다면, 정부2.0은 웹2.0 기반으로 플랫폼 제공자로서 역할하는 정부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정부2.0은 공공정보에 대한 정부의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며, 쌍방향 정보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3.0은 정부

〈표 4〉 NISA의 정부 패러다임 구분

정부 구분	정부1.0 (전자정부)	정부2.0	정부3.0
웹 단계	웹 (1995-2000)	웹2.0 (2005-2010)	리얼 웹 (2015-2020)
서비스	정부주도 서비스	시민주도 윈스톱 서비스	개별 국민을 위한 정부서비스 포털
	일방향 서비스 시공간 제약 하의 서비스 공급기반의 일률적 서비스	쌍방향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정부-민간 협력 기반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시공간 제약없는 서비스 지능형 서비스

2.0 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서 지능화된 맞춤형 개인별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O'Reilly, 2009a, 2009b; 김유승, 2010, p. 208; 김유승, 전진한, 2011, pp. 52-53). 기존 전자정부로부터 정부2.0에 이르는 변화는 정부 기능과 서비스에 있어 혁신적 전환을 불러왔다면, 정부2.0과 정부3.0 사이엔 이와 같은 근본적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진임, 김유승(2014, p. 52)은 “정부2.0이 정부1.0으로부터의 혁신적 패러다임의 변화라면, 정부3.0은 정부2.0 패러다임을 계승한 기술적 발전”이라고 규정하며, 정부2.0과 정부3.0 간의 차이점을 유비쿼터스 환경과 개인별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진보의 수용여부에서 찾았다. 불과 10여 년 전 상상하지 못했던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대중적 확산과 무선 통신 대역폭의 확장 및 빅데이터 활용 기술의 발전은 진화된 정보서비스를 가능케 만들었다. 정부3.0은 이러

한 기술의 진보를 수용한 행정서비스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정부3.0의 개념도 이와 궤를 같이 있음은 안전행정부가 2014년 6월 발간한 『2013 정부3.0 백서』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표 5〉 참조). 정부2.0이 민주성을 핵심가치로 하여, 국민 중심의 양방향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참여가 제한적인 반면, 정부3.0은 확장된 민주성을 핵심가치로 국민 개개인에게 양방향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능동적 공개, 참여,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실현한다는 것이다(안전행정부, 2014a, p. 4).

박근혜정부는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와 공유를 통해 정책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대정부 신뢰를 제고하는 ‘투명한 정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정책을 형성하고 문제를 사전에 감

〈표 5〉 박근혜정부의 정부 패러다임 구분

	정부1.0	정부2.0	정부3.0
운영방향	정부 중심	국민중심	국민 개개인 중심
핵심가치	효율성	민주성	확장된 민주성
참여	관 주도, 동원 방식	제한된 공개, 참여	능동적 공개, 참여, 개방, 공유, 소통, 협력
행정서비스	일방향 제공	양방향 제공	양방향, 맞춤형 제공
수단(채널)	직접 방문	인터넷	무선 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지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모든 정책, 사업, 서비스를 수요자인 국민·기업의 특성·유형별 요구에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선제적으로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 정부'를 정부3.0의 3대 전략으로 수립하고, 각 전략 아래 10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김유승, 2014, p. 53; 안정행정부, 2014, p. 3)(〈표 6〉 참조).

본 연구는 이중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를 세부 추진과제로 두고 있는 '투명한 정부' 전략에 주목한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사전정보공표제도와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원문정보공개를 실시하며, 정책실명제를 내실화하는 한편,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공데이터 개방 로드맵 수립,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등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앞서 알권리제도의 연혁에서 언급한, 2013년 정보공개법 개정과, 같은 해 공공데이터법 제정은 이러한 추진과제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제8조의 2), 비공개대상 정보 중 의사결정, 내부검토 과정 결과통지(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무화(제18조 제2항), 정보공개 관련 신분보장(제28조)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기한 내 공개여부 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강화(제11조 제5항, 제18

조, 제19조, 제20조)한 정보공개법의 개정은 괄목할 만하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정부3.0 정책이 2009년 『클라우드 컴퓨터 활성화 종합계획』(방송통신위원회, 2009), 2011년 『국민과 하나되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추진계획(안)』(행정안전부, 2011) 등 이명박 정부가 진행했던 기존 정책과 동일하거나 일부 수정된 것에 다르지 않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김철, 2013b), 알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시스템과 법제도를 채워줄 정책담당자들과 일선 실무자들의 인식과 실천 의지가 부족하고(정진임, 2013; 박성준, 2013; 고승우, 2013), 높은 정보공개율과 공유정보의 양적 증가 속에서도 주요 공공정보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김봉수, 2013; 김철, 2013a). 정부3.0 서비스 포털인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과 정보공개 앱의 사용성과 기술적 문제점 역시, 정진임, 김유승(2014) 그리고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3.0 정책 실행에 있어 문제점은 일면 당연한 것이다. 법제도는 마술지팡이가 아니다. 알권리제도의 이해당사자들이 지녀온 관행과 인식은 짧은 시간에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도의 확립과 안착에는 상당한 시간과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3.0 정책의 문제는 조금 더 근본적인 곳에 있다. 정부3.0이 지향

〈표 6〉 박근혜정부의 정부3.0 3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li> <li>•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li> <li>• 민관협치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내 칸막이 해소</li> <li>• 협업, 소통지원을 위한 정부운영시스템 개선</li> <li>•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li> <li>• 창업 및 기업활동 윈스톱 지원 강화</li> <li>• 취약계층 서비스 접근성 제고</li> <li>•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li> </ul>

하는 맞춤형, 지능형 서비스 정책 앞에는 정보 감시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로부터, 공공정보의 품질과 사이버 보안에 이르는 다양한 태생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본 연구는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할 과제와 함께, 정책의 근간이 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위험과 이에 대한 해법에 주목한다. 다음에서는 정부3.0의 위험과 과제를 공공정보의 품질, 공공정보의 수집, 활용으로 인한 통제와 감시, 보안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

## 6. 정부3.0의 위험과 과제

첫째, 공공정보의 품질 문제다. 공공정보의 품질 관리는 정부3.0의 전제조건이다. 공공데이터의 민간제공과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공정보의 품질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업무용으로 민간이 활용하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데이터분석 전문인력을 배치한 곳은 208개 공기업 중 32%, 52개 공공기관 중 25%뿐이었다(정윤희, 2013).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p. 7)이 2011년 조사한 31개 공공데이터베이스 중 42%의 품질관리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들의 평균오류율은 5.19%로 민간데이터베이스 평균오류율 2.1%보다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데이터의 품질 수준이 취약한 상황에서 데이터베이스 개방을 위한 품질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공공데이터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지만, 예산과 전문인력의 지원 없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공데이터의 품질로 인한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민사상, 형사상의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법 제36조는 공공데이터의 높은 오류율과 낮은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지책으로 읽힌다. 정부3.0의 성공을 위해 서려면 단기간에 개방, 공유되는 공공정보와 데이터의 수와 양을 늘리는 일보다는 이용자인 국민 입장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보와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정보의 수집 및 활용상의 위험들이다. 먼저, 스마트 정부의 '빅브라더'화에 대한 우려다. 정부3.0은 스마트 정부를 지향한다. 개별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능형 서비스는 정부 2.0과 정부3.0을 구분 짓는 가장 큰 특징이다.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각기 다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는 스마트 정부는, 역설적으로 국민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개인별 맞춤 서비스의 편리함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맞춤 서비스를 위한 개인화와 개인정보의 제공은 국가기관의 권력과 통제를 증대시키고, 차별을 위한 도구로 돌변할 수 있다(조동원, 2013, p. 257). 다시 말해, 정부3.0에는 스마트 정부가 아닌 빅브라더 감시체제가 될 위험이 상존한다. 국민의 일상과 사회 활동에 대한 정보수집과 활용은 정부3.0이 지향하는 확장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3.0 정책을 올바르게 구현하고자 한다면 먼저 국민의 신뢰부

터 확보하여야 한다. 수집된 정보를 권력과 통제 수단인 오로지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 활용할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 구축이야말로 올바른 정부3.0 구현의 길이다.

정부3.0 서비스를 위한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있어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프라이버시(privacy)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 수많은 전자적 흔적을 남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구글을 검색하며, SNS에 글을 남긴다. 그 모든 방대한 정보들은 자동적으로 수집, 축적되고 분석의 대상이 된다. 정부3.0 추진과정의 하나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도 국민 개개인이 남기는 정보에 기반을 둔다. 정보의 재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심지어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는 프라이버시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한다(Johnson, 2010). 하지만, 국가 단위의 이와 같은 행위는 또 다른 차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한다(황주성, 2013, p. 220). 백옥인(2013, pp. 160-161)은 "사회구성원을 범주화한 단위로 분류하고 특정한 사회집단을 대상으로 통제를 시행할 경우 개인 차원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라 집단 프라이버시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의 또 다른 기본권을 존중할 때, 비로소 보장받을 수 있다. 정부3.0의 구현도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호해주었을 때, 가능하다.

셋째, 공공정보 보안의 문제다. 정부3.0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방으로 인해 검색엔진의 공공정보 접근이 용이해졌다. 하지만 보안에 관한 인프라가 미흡한 수준에서의 개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사이버 위협의 급증으로 이어진다. 무선망 보안의 위협, 모바일 기기의 해킹 취약성 등 모바일 보안 환경의 개선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통제가 요구된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보안 문제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클라우드 환경이 가지는 보안의 취약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기존 시스템에 적용되는 보안 기술이 클라우드 환경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에서 막아낼 수 있는 해킹이라면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 정작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문제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 보안의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 관리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한 정보의 유출 및 오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 위험은 더욱 증가된다.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공공정보의 보안은 정부3.0 정책이 간과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다.

## 7. 맺는 글

18세기 고전적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개념으로 짝을 튼 알권리는 21세기 민주주의의 기본권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지난했던 알권리제도의 연혁은 이제 정부3.0을 마주하고 있다. 정부3.0이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공공영역 서비스의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예상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3.0이 가져올 효과는 검증되고 있지 않다. 반면, 정부3.0이라는 장밋빛 전망 뒤에 숨은 부정적 측면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명징하다.



시행 2년차 박근혜정부의 정부3.0은 아직도 일상생활에 와 닿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앞서 논하였듯이, 정부3.0은 국민의 참여,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는 플랫폼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3.0이 범정부적 캠페인으로 주도되는 것은 앞뒤가 바뀐 풍경이다. 정부 3.0의 겉모습이 아닌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워지는 대목이다. 정부가 보유, 관리하던 데이터의 빗장을 단순히 열어놓는다고 정부 3.0이 실현되지는 않는다. 2013년 G8이 채택한 『오픈 데이터 헌장(Open Data Charter)』이 천명하였듯이 공공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품질과 양이 충분해야 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용

되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GOV.UK, 2013).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복무하여야 한다. 우리의 정부3.0이 헌장의 원칙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우리의 갈 길은 멀다. UN 전자정부개발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세계 1위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 경쟁력 지표는 26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지수는 46위다.<sup>3)</sup> 우리에게 정부3.0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정부3.0은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 국민을 참여, 소통, 협력의 주인으로 자리 잡게 하는 정부3.0, 알권리를 꽃피울게 할 정부3.0의 구현을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고승우 (2013). 박근혜 정부, 주요 사안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무시. 검색일자: 2014. 10. 2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6704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67041)
- 구병삭 (1974).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사법행정, 15(1), 22-29.
- 구병삭 (1981a).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의 정보공개. 법학논집, 19, 37-79.
- 구병삭 (1981b).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사법행정, 22(7), 32-38.
- 김미경 (2008). 굿 거버넌스와정보공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1), 203-220.
- 김배원 (1989). 알 권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김배원 (1991a). 알 권리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재검토. 법학연구, 32(1), 157-183.
- 김배원 (1991b). 알 권리의 한계로서의 국가안보. 법학연구, 32(1), 185-208.
- 김배원 (1999). 미국의 정보자유법: 1996년 개정 전자정보자유법. 미국헌법연구, 10, 189-221.

3) 우리나라는 UN 전자정부개발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에서 2012년, 2104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2014-2015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서는 26위를 차지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177개국 중 46위로 나타났다.

- 김배원 (2001). 미국의 정보자유법(FOIA) 30년(1966-1996). 공법학연구, 3(1), 89-115.
- 김봉수 (2013). 정부3.0 시대, '정보공개율 95%'의 함정. 아시아경제. 검색일자: 2014. 10. 20.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70810494738241>
- 김승태 (2009). 전자적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2(3), 51-82.
- 김영호 (1973). 알 권리의 법적구성이론. 법조, 22(8), 27-38.
- 김유승 (2010). 거버먼트 2.0 기반의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기록학연구, 25, 197-231.
- 김유승. (2014). 기록으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제도적 고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1), 53-73.
- 김유승, 전진한 (2011). 거버먼트2.0 기반의공공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47-66.
- 김창조 (2006). 정보공개법상비공개사유. 법학논고, 25, 115-141.
- 김 철 (2013a).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방안 비판: 정부3.0 혁신을 중심으로. 사회공공연구소. 검색일자: 2014. 10. 20.  
<http://ppip.nodong.org/webbs/download.php?board=pds&id=180&idx=1>
- 김 철 (2013b). 정부 1.0도 못하면서 정부 3.0 비전 선포식? 미디어스. 검색일자: 2014. 10. 20.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74>
- 박성준 (2013). 지원 법률도 없고 공무원 이해 부족. '정부3.0' 구호뿐. 세계일보. 검색일자: 2014. 10. 20.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1/19/20131119005807.html>
- 방민석 (2013). '정부3.0'에 대한 개념적 탐색과 법정정책 과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6(3), 137-160.
- 방승통신위원회 (2009). 「클라우드 컴퓨터 활성화 종합계획」. 검색일자: 2014. 10. 20.  
<http://www.kcc.go.kr/download.do?fileSeq=26825>
- 배병호 (2008). 미국의 정보공개제도와 언론. 2008 조사분석 워크숍. 한국언론재단, 22-34.
- 배병호 (2009). 미국의 정보공개제도와 언론. 2008 조사분석 워크숍: 정보공개제도와 언론보도. 한국언론재단, 22-53.
- 배정근 (2009). 정보공개법을 통한 권리 실현의 한계. 한국언론학보, 53(1), 368-454.
- 백육인 (2013). 빅데이터의 형성과 전유체제 비판. 빅데이터와 위험 정보사회. 158-184.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서진완 (2012). 차세대전자정부(e-Gov)의 Locus와 Focus. 스마트정부추진전략 컨퍼런스, 스마트정부(Gov3.0)오픈 포럼.
- 송효진, 황성수 (2014). 정부 3.0 추진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과 지방정부의 방향성 모색: 공공데이터 법에 관한 이해와 개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7(2), 1-28.
- 심성보 (2013). '정부 3.0' 정책기조와 기록관리 개선 방향. 2013년도 한국기록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57-68.

- 심영섭 (2008). 북유럽 국가의 정보공개제도, 2008 조사분석 워크숍: 정보공개제도와 언론보도, 한국언론재단, 54-65.
- 안용교 (1974).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안용교 (1982a). 국민의 알 권리. 신문연구, 겨울호, 22-42.
- 안용교 (1982b). 약세스권의 행정배경과 전개. 고시연구, 3월호, 23-38.
- 안전행정부 (2014a). 2013 정부3.0 백서.
- 안전행정부 (2014b). 2013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 엄기열 (2003). 알권리의 개념적 가능성과 한계: 알권리에 대한 1989년의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의 학설에 관하여. 언론과 법, 2, 409-442.
- 오영균 (2013). 지방정부 3.0 이론과 과제. 지방행정연구, 27(2), 3-25.
- 우윤석 (2013). 정부 3.0의 이론적 배경과 해외사례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16, 21-47.
- 유일상 (2003).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권. 한국방송학회세미나 및 보고서, 1-20.
- 윤중수 (2010). Government2.0 in Web 2.0 Era. 거버먼트2.0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검색일자: 2014. 10. 20. <http://www.slideshare.net/iwillbe99/government-20-2932299>
- 이동훈 (2008). 유비쿼터스사회에서의 액세스권과 알권리 해석론. 공법학연구, 10(2), 81-104.
- 이재완 (2014). 정부운영 패러다임과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상응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7(2), 147-172.
- 이재진 (2005). 저널리즘영역에 있어서의 알권리의 기원과개념변화에 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5(1), 231-264.
- 이주량 (2010). Government2.0 동향과과학기술분야의 대응방안. STEPI ISSUES & POLICY 2010-0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임병국. (2002). 언론 법제와 보도. 서울: 나남.
- 장 용 (1969). 언론과 인권 - 한·미 언론법과 판례의 비교연구. 서울: 선명문화사.
- 정윤희 (2013). 공공데이터 오류율, 전문인력 양성 시급. ZDNet Korea. 검색일자: 2014. 10. 20.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le\\_id=20131025153533](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le_id=20131025153533)
- 정진임 (2013). 정보공개청구에 '묻지마' 일관 인수위, 정부3.0 공약은? 미디어스, 검색일자: 2014. 10. 20.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26>
- 정진임, 김유승 (2014). 정부3.0 시대, 정보공개시스템의 개선 과제. 기록학연구, 39, 45-72.
- 정하명 (2009). 전자정보공개제도의현황과 문제점. 공법학연구, 10(3), 259-282.
- 조규하 (1962). 취재의 제문제: 국민의 알권리. 신문연구, 봄호, 16-31.
- 조동원 (2013). 빅데이터 시대 정보 유출과 해킹 문화. 빅데이터와 위협 정보사회, 248-276.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조영삼 (2009). 기록정보공개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방안. 기록학연구, 22, 77-114.

-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1999). 정보공개청구운동백서 1998.5-1999.5. 참여연대.
- 최정민, 김유승 (2013). 국내 정보공개 연구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1-25.
- 최창섭 (1982). 정보공개에의 요구권. 관훈저널, 37, 74-87.
- 최창호 (2004). 미국의 정보자유법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20, 89-123.
- 하승수 (1999). 「정보공개청구운동 1년의 평가와 과제」, 정보공개와 참여민주주의.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정부 3.0: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다.
- 한병구 (2000). 언론과 윤리법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한상범 (1970).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법조, 19(21), 13-24.
- 행정안전부 (2011). 국민과 하나되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스마트 전자정부(Smart Gov) 추진계획. 검색일자: 2014. 10. 20. <http://blog.jinbo.net/attach/4749/1392027904.pdf>
- 홍성찬 (1978).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고찰. 사회과학논집, 9, 49-63.
- 홍일표 (2009). 정보공개운동의 '이중적 전환'과 시민참여. 기록학연구, 22, 37-76.
- 홍필기 (2012).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전. 스마트추진전략 컨퍼런스. 스마트정부(Gov3.0)오픈 포럼.
- 황주성 (2013). 빅데이터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문제의 재조명. 빅데이터와 위험 정보사회, 220-247.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Augustyn, Maja & Monda, Cosimo (2011). Transparency and access to documents in the EU: Ten years on from the adoption of regulation 1049/2001. Europ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Retrieved October 20, 2014 from [http://www.eipa.eu/files/repository/eipascope/20110912103927\\_EipascopeSpecialIssue\\_Art2.pdf](http://www.eipa.eu/files/repository/eipascope/20110912103927_EipascopeSpecialIssue_Art2.pdf)
- Blasi, Vincent (1997). The checking value in first amendment theory. American Bar Foundation Research Journal, 2(3), 521-649.
- EC (1992). Declaration on the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191, Vol.35., 29 July 1992. Notice No. 92/C 191, 101.
- EC (1993). Code of conduct concerning public access to council and commission document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340. Vol. 35. 31 December 1993, 41-42.
- EC (2001). Regulation (EC) No 1049/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01 regarding public access to european parliament, council and commission document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 145, 43-48.
- Eggers, William (2005). Government 2.0: Using technology to improve education, cut redtape, reduce gridlock, and enhance democracy. Plymouth: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Government 2.0 Taskforce (2009). Engage: Getting on with Government 2.0. australian government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Retrieved October 20, 2014 from <http://www.finance.gov.au/publications/gov20taskforcereport/index.html>
- GOV.UK (2013). Open data charter. Retrieved October 20, 2014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pen-data-charter>
- Johnson, Bobbie (2010). Privacy no longer a social norm, says Facebook founder. The Guardian. Retrieved October 20, 2014 from <http://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0/jan/11/facebook-privacy>
- Manninen, Juha (2006). Anders chydenius and the origins of world's first freedom of information act. The World's First Freedom of Information Act: Anders Chydenius' Legacy Today. Anders Chydenius Foundation.
- Halstuck, M., & Chamberlin, B. (2006).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96-2006: A retrospective on the rise of privacy protection over the public interest in knowing what the government's up to. *Communication Law and Policy*, 11(4), 511-564.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08). Concepts and features of Government 2.0 and 3.0. Retrieved October 20, 2014 from <http://www.mikekujawski.ca/ftp/Government2.0and3.0.pdf>
- OECD (2005). Digital broadband content: Public sector information and content. DSTI/ICCP/IE(2005) 2/FINAL
- O'Reily, Tim (2009a). Do it Ourselves. Gov2.0 Summit 2009. Retrieved October 20, 2014 from <http://www.youtube.com/watch?v=27IQu37oYks>
- O'Reily, Tim (2009b). Gov 2.0: It's all about the platform. TechCrunch. Retrieved October 20, 2014 from <http://techcrunch.com/2009/09/04/gov-20-its-all-about-the-platform/>
- Wiggins, James Russell (1956). Freedom or secrecy. Oxford University Press. (재인용) 유일상 (2003).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권. 한국방송학회세미나 및 보고서, 1-20.; (재인용) 이재진 (2005). 저널리즘영역에 있어서의 알권리의 기원개념변화에 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5(1), 231-264.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hn Yong-gyo (1974). Study on the public's right to know. Konkuk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Ahn, Yong-Gyo (1982a). People's Right to Know. Sinmunyeongu, Winter, 22-42.
- Ahn, Yong-Gyo (1982b). Background and evolution of Access Rights. Gosiyeongu, March, 23-38.
- Bae Byeong-ho (2008).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the media in the United States. 2008 Analysis Workshop. Korea Press Foundation, 22-34.
- Bae, Byeong-Ho (2009). America's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the media. 2008 Analysis workshop: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press releases, Korea Press Foundation, 22-53.
- Bak, Seong-Jun (2013).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law and no official support. 'Government 3.0' relief only. Segye Ilbo. Retrieved October 20, 2014 from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1/19/20131119005807.html>
- Bang, Min-Seok (2013). Explore conceptual and law-policy challenges for 'government 3.0.'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16(3), 137-160.
- Choi, Chang-Ho (2004). Study on the US Freedom of Information Act. Beopangnongu, 20, 89-123.
- Choi, Chang-sup (1982). Claims of information disclosure. Kwanhun Journal, 37, 74-87.
- Choi, Jeong Min & Kim, You-seung (2013). A Study on the Reserch Trends of Information Freedom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ment, 13(3), 1-25.
- Disclosure Agency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1999). Freedom of Information Movement White Paper 1998.5-1999.5.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 Ha, Seung-Su (1999). Assessment and Challenges of Information Disclosure charged Movement 1 years. Disclosure and Participatory Democrac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 Han, Byeong-gu (2000). Media law and ethic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Han, Sang-Beom (1970).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know. Beopjo, 19(21), 13-24.
- Hong, Il-Pyo (2009). 'Dual Transformation' of Freedom of Information Movements and Civic Participation.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2, 37-76.
- Hong, Pilgi (2012). Challenges of e-government services. Smart Strategies Conference. Smart Government(Gov3.0) Off Forum.
- Hong, Seong-Chan (1978). Study on the rights of citizens to know. Sahoegwahangnonjip, 9, 49-63.

- Hwang, Joo-Seong (2013). Revisiting the privacy problem in big data environments. *Big Data and Risk Information Society*, 220-247. Seoul: Communication Books.
- Jang, Yong (1969). *Media and human rights - a comparative study of the US, and Media Law Cases*. Seoul: Seonmyeongmunhwasa.
- Jeong, Ha-Myoung (2009). Current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Program In Korea. *Journal of Korea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10(3), 259-282.
- Jeong, Yunhui (2013). Public data error rate, professional manpower urgently. ZDNet Korea. Retrieved October 20, 2014 from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le\\_id=20131025153533](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le_id=20131025153533)
- Jo, Dong-Won (2013). Information leakage and hacking culture in the big data era. *Big Data and Risk Information Society*, 248-276. Seoul: Communication Books.
- Jo, Gyuha (1962). *Problems of coverage: the public's right to know*. Shinmunyeongu, Spring, 16-31.
- Jung, Zin-Im (2013). 'Do not ask' consistently charged the committee on public information, 3.0 Government commitment is? MediaUs. Retrieved October 20, 2014 from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26>
- Jung, Zin-Im & Kim, You-Seung (2014). Government 3.0 Era, Issues on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9, 45-72.
- Kim, Bae-Won (1989). *A Study on the Right to Know*.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Kim, Bae-Won (1991a). Legal Charater of the Right to Know. *Law Review*, 32(1), 157-183.
- Kim, Bae-Won (1991b). National security as a limitation of the right to know. *Law Review*, 32(1), 185-208.
- Kim, Bae-Won (1999). The 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 Amendments of 1996. *Study on The American Constiution Instiution of American Constiution*, 10, 189-221.
- Kim, Bae-Won (2001).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in the U.S. 30years(1966-1996). *Journal of Korea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3(1), 89-115.
- Kim, Bong-Su (2013). Government 3.0 era, Pitfalls of information disclosure rate of 95%. *Asia Economic*. Retrieved October 20, 2014 from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70810494738241>
- Kim, Chang-Jo (2006). The Information of Non-Disclosure in the Act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25, 115-141.
- Kim, Cheol (2013a). Criticism on disclosure enlargement methods of public institutions: focus

- on innovation in government 3.0. Public Policy Institute for People. Retrieved October 20, 2014 from <http://ppip.nodong.org/webbs/download.php?board=pds&id=180&idx=1>
- Kim, Cheol (2013b). Without government 1.0, Government 3.0 vision ceremony? MediaUS. Retrieved October 20, 2014 from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74>
- Kim, Mee-Kyung (2008). Good Governance and Information Disclosure: Focus on the LAIS (Local Administratio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1), 203-220.
- Kim, Seung-Tae (2009). Operations Evaluation of the electronic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12(3), 51-82.
- Kim, Yeong-Ho (1973). Legal Constitution Theory of the Right to Know. *Beopjo*, 22(8), 27-38.
- Kim, You-seung (2010). A Study on freedom of information in the Government 2.0 era.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5, 197-231.
- Kim, You-seung (2014). A study on legal issues of public data management as records: Focused on analysis of the act on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ment*, 14(1), 53-73.
- Kim, You-seung & Jeon, Jin-Han (2011). A Study on Public Sector Information Services in the Government 2.0 Er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1), 47-66.
- Koh, Seung-U (2013). Bak Geunhye Government, Ignore the people's right to know about the key issues. Retrieved October 20, 2014 fro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6704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67041)
- Koo, Byeong-Sak (1974). Freedom of Information and Rights to Know. *Sabeopaengjeong*, 15(1), 22-29.
- Koo, Byeong-Sak (1981a).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freedom of information on government administration. *Beopangnonjip*, 19, 37-79.
- Koo, Byeong-Sak (1981b).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freedom of information. *Sabeopaengjeong*, 22(7), 32-38.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09). Cloud computer activation comprehensive plan. Retrieved October 20, 2014 from <http://www.kcc.go.kr/download.do?fileSeq=26825>
- Lee, Dong-Hoon (2008). The New Paradigm to interpret the Right of Knowledge and Access in Ubiquitous Society. *Journal of Korea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10(2),



81-104.

- Lee, Jae-Jin (2005). The Origin and the Changes in the Meaning of 'Right to Know' in Journalism Field.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5(1), 231-264.
- Lee, Jae Wan (2014). A Study on the Correspondence Between Government Paradigm and Information Disclosure Paradigm.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17(2), 147-172.
- Lee, Ju-Ryang (2010). Government2.0 Trend and Countermeasures of Science and Technology. STEPI ISSUES & POLICY, 2010-02.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Lim Byeong-guk (2002). *Media Legislation and Report*. Seoul: Nanam
-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11). The world's best e-Government Implementation (Smart Gov) Plans for Smart E-government. Retrieved October 20, 2014 from <http://blog.jinbo.net/attach/4749/1392027904.pdf>
-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14a). 2013 Government 3.0 White Paper.
-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14b). 2013 Freedom of Information Annual Report.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3). *Government 3.0: Dreaming of the new Republic of Korea*.
- Oh, Young-Kyun (2013). The Theory and Task of Local Government 3.0. *Local Administration Review*, 27(2), 3-25.
- Pae, Jung-Kun (2009). Limits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Know through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 Analysis of the Rulings of Supreme Court Related to Non-disclosure Claus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3(1), 368-454.
- Paik, Wook Inn (2013). The Critique of Big Data Formation and Appropriate System. *Big Data and Risk Information Society*. 158-184, Seoul: Communication Books.
- Seo, Jin-Wan (2012). Next-generation e-government's Locus and Focus. *Smart Government Strategies Conference*. Smart Government (Gov3.0) Open Forum.
- Shim, Yeong-Seop (2008).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the Nordic countries. 2008 Analysis Workshop: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Press Releases. Korean Press Foundation, 54-65.
- Sim, Sung-Bo (2013). Government 3.0 policy stance and Records Management Improvement. 2013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pring Conference, 57-68.
- Song, Hyo-Jin & Hwang, Sung-Soo (2014). Seeking Strategies for Local Governments to

- Prepare for Public Data Act.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17(2), 1-28.
- Uhm, Kiyul (2003). Conceptual Review and Limitation of the Right to Know. Media and Law, 2, 409-442.
- Woo, Yoonseuk (2013). A Study on Theoretic Background and Foreign Cases of Government 3.0. Sahoegwahangnonchong, 16, 21-47.
- Yoo, Ilsang (2003). Right to know the people and the individual's private life.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Seminar and Report, 1-20.
- Yoon, Jongsu (2010). Government2.0 in Web 2.0 Era. How to pursue Government 2.0?, Retrieved October 20, 2014 from <http://www.slideshare.net/iwillbe99/government-20-2932299>
- Zoh, Young-Sam (2009). The Promotion State and Measures to Improve the Recor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2, 77-114.